

# 일본 근대문화유산의 보호시책에 관한 연구

金泰永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金東植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 근대사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로서 한국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역사적 시기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 동안 한국 근대기에 대한 연구는 외세의 침점(侵占)에 대한 한국 근대사의 회복 및 극복이라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사의 지속적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근대사의 흐름을 통한 역사적 시대구분, 외래문화의 유입과 수용, 상업 및 유통구조의 변화, 도시구조 및 근대적 생활사의 변화 등 다방면에서 많은 선학들의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방대한 연구업적을 토대로 하여 이제는 근대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정리·보존하여 후세에게 넘겨주는 작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현존하는 유형·무형의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개념 정립과 아울러 문화재로의 지정, 보존 및 활용 등과 같은 국가적인 시책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근래 문화재의 개념은 당해 문화재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문·지리적 환경요소 등까지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그 성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당해 문화재가 그 시대를 종합적으로 음미하게 하는 역사를 지녔다면 당연히 오늘의 현재를 있게 한 19·20세기의 근대화·산업화 과정은 전근대와는 차별되므로,

이제 그 당시의 대표적 산물들에 대해 보존과 활용방안이 적절히 강구되지 않으면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문명사회에서 조만간 그 자취를 잊게 되고, 향후에는 근대시대를 대표하게 될 문화유산들이 대부분 청손·멸실 될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에 근대문화유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분야별·시대별 등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지정 보존을 위한 조사연구 및 유물의 성격에 따른 적절한 보존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전통문화의 개념과 근대화 과정이 우리와 유사한 일본을 중심으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시책의 전개과정, 근대문화유산의 분야별 구분 및 지정기준, 그리고 보존 및 활용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일본을 사례로 하여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지정하기까지의 경위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보호시책, 보존과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향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범위는 현재 일본의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시책, 보존·활용방안과 그 사례를 내용으로 하고, 조사대상지는 크게 문화청이 있는 東京地域과

大阪·京都地域<sup>1)</sup>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은 우선적으로, 근대문화유산의 보호에 대한 국가 시책을 직접 입안·시행한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지정도시(指定都市)를 직접 방문하여 보호시책의 입안 경위, 보존·활용방안, 그리고 시행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전부터 근대의 건조물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왔던 보존·활용사례와, 최근에 지정된 근대문화유산의 보전·활용사례에 대한 문헌 및 현장조사로 이루어졌다.

## 2. 근대문화유산의 보호논리의 전개

### 2-1. 보호의 필요성

일본의 근대기는 우리 보다 앞서 시작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는 커다란 정치적·사회적 변혁의 시기이었으며, 해외와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성행하였고, 사회조직도 복잡하게 변화하였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과 공업화의 진전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면서 다양한 정보와 제품을 대량으로 신속히 제공하게 되어, 사회 활동의 전반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었다. 그러나 당시 광범위한 분야의 방대한 양의 문화유산 중 오늘날 보호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대부분은 사회변동·생활양식의 변화·개발의 진전·기술혁신과 정보화의 진전 등으로 소멸 위기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많으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직 문화재로서의 인식과 평가가 정착되어 있지 않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중에는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귀중한 유산이 다수 소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적절히 보존하여 후세에 전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sup>2)</sup>으로 보고 있다.

### 2-2. 보호시책의 입안경위

#### 일본에서 근대기의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1) 東京地域: 에도 동경박물관, 문화청 문화재보호부 건조물과, 동경도청 문헌정보 센터, 전국 근대문화유산 연락협의회 사무국, 요코하마 미라토미라이 21단지내의 도크유적)

· 大阪·京都地域: 대관시 교육위원회 사회교육부 문화재보호과, 경도부 교육위원회 문화재보호과, 경도문화박물관, 시가현 교육위원회 문화재보호과, 대관부 교육위원회 문화재보호과 등)

· 조사기간: 1999. 11~2000. 1

2) 大塚英明, 『근대의 과학·산업기술유산의 보존·활용의 현상과 과제』, 문화청, 일본-(자료1)『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하여』(報告), 미술·역사자료분과회 보고의 발췌, 근대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동경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세미나 자료집

적극적으로 시작된 것은, 근대문화유산의 보호가 새로운 관점으로 도입되었던 1994년 7월 문화재보호심의회 산하에 설치된 문화재보호기획특별위원회에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한 문화재보호시책의 개선충실에 대하여」라는 보고가 있은 후 보호와 활용방식을 검토하기 위하여同年 9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의」가 설치되면서이다.

조사연구는 크게 ①기념물, ②건조물, ③미술·역사자료, ④생활문화·기술이라는 4분야에 대해서 각 분과회<sup>3)</sup>를 마련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가의 협력을 얻으면서 진행되었다.

이후 보호의 필요성, 보호방안, 보호촉진의 3항목이 중점과제로 논의되었으며, 각 분과회에서는 보고 내용을 취합하여 공표<sup>4)</sup>하게 된다.

이러한 보고를 기초로 1996년 7월에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하여」라는 최종보고서가 완성되었다.

모든 분과회의 보고가 정리된 뒤 위 협력자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의논을 총괄하여 근대문화유산의 보호방안 및 보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점과제를 정리하였으며, 문화청의 각 분과회에서는 보고에서술된 제언을 기초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시책을 시행하였다.<sup>5)</sup>

기념물 분과회는 곧이어 전국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근대유적조사」로서, 1996년 7월의 실시요항 결재를 근거로 실시되었다. 이에 수반되어 지도·조언하는 「근대유적의 조사 등에 관한 검토회」가 설치되었다.

미술공예·역사자료 분과회에서는 1994년 8월에 보고된 자료를 기초로,同年 10월에 지정기준의 일부개정(문부성 고시 제185호)이 이루어졌으며, 근대의 과학·산업기술에 관한 문화유산의 지정·보존에 착수하여 1996년 현재 6건이 지정되었다. 또한 당해 연도부터 통상산업성, 국립과학박물관, 지방공공단체, 관계기업 및 관련학회 등의 협력·지원을 얻어, 전국적인 소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문화재 보호행정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3) 文化廳의 文化財保護部는 傳統文化課, 記念物課, 美術工藝課, 建造物課로 구성되었고, 전통문화과는 생활문화·기술분과회, 기념물과는 기념물분과회, 미술공예과는 미술·역사자료분과회, 건조물과는 건조물분과회를 각각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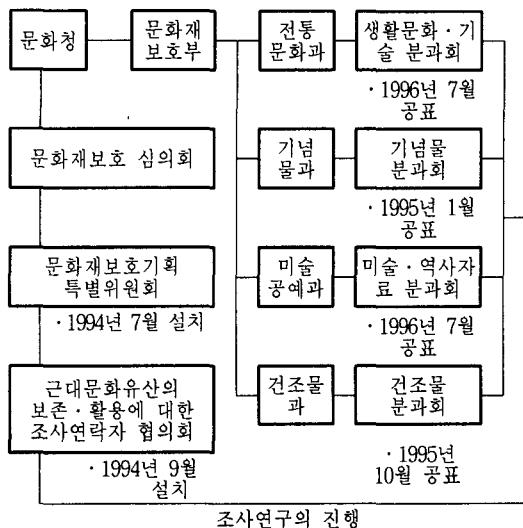
4) 기념물 분과회 및 건조물 분과회(1995. 1월과 10월)

미술·역사자료 분과회 및 생활문화·기술 분과회(1996. 7)

5) 近代遺跡調査實施要項(1996. 7. 18 문화재보호부장결재)

건조물 분과회는 타 분과회보다 앞선 1994년 9월부터 관련학회에 의뢰하여 조사를 착수하였다. 이런 연유로 많은 중요문화재의 지정이 있었으며, 근대 건조물의 보호지침도 작성되었다. 생활문화·기술 분과회 역시 10여 차례의 검토를 거쳐 근대의 생활문화·기술의 특질과 보호 방책안을 제시하였다.

표 1. 근대문화유산의 분과회별 기구조직표



## 2~3. 보호방안 및 추진정책

### (1) 지정제도에 의한 보호

근대문화유산은 다양하고 또한 대량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중 전형적·대표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중요문화재 등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2) 등록제도에 의한 보호

문화재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여서 근대 건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현상변경 등의 신고제와 지도·조언·권고를 기본으로 하는 완화된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등록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것은 다양하고 또한 대량인 근대 건조물을 폭넓게 후세에 계승하기 위해서는 강한 규제를 완화하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제도이다.

### (3)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의 보호

지방공공단체에서도 조례에 기초하여 해당 구역의 중요한 문화재를 지정하고, 적절한 보존 및 활용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의 보호방안에 따른 보호를 위해 아래의 여섯 항목을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 근대문화유산의 소재 현황 등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한다.

둘째, 소재·형상과 보존상황 등의 정보를 디지털 정보의 형태로 축적해 가는 조직의 필요성으로, 문화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전국 네트워크화를 진행한다.

셋째, 정보축적은 국민들이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기반의 형성을 위한 것으로서, 향후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공개수법의 개발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보존방법 등에 있어서 재료와 기술 등에 있어서 근세까지의 것과는 크게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수리 등의 기술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보호해 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취급하는 전문적 인재의 양성·확보노력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관계성청(關係省廳)·기관·단체 등의 연휴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이해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서 문화재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근대문화유산의 전국적 조사시행

### 3-1. 시대 및 대상범위의 설정

근대문화유산의 대상시기는 각 분야별·분류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개략 폐리 내항 이후 서양의 근대기술과 제도 등의 수용이 시작된 개국의 시기부터 정치제도와 사회제도에 현저한 변동이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 종결(1945년)까지 설정하고 있다.

각 분야 별로 그 가치를 고려하여 시기의 연장도 고려하여 대상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생활문화·기술분야의 경우는 그 범위가 다종다양한 것으로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념물 분야는 근대유적이 각 지역별로 근대화 과정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그 대상의 설정에 신중을 기하며, 산업·과학 기술 등 변화의 속도가 빠른 부분은 긴급히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술·역사자료분야에 있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인물의 기준 5분야에 과학기술을 한 분야로 추가하고 있으며, 현대와 연결된 과학

표 2. 근대문화유산의 분야별 대상 선택기준

구분	생활문화·기술분야	미술·역사자료분야	기념물분야	건조물분야
대상	전통적인 생활문화·기술의 연장으로써 새롭게 창조된 것, 해외문화가 이입된 것, 절충적 문화의 전개에서 생겨난 것, 일상적 생활 가운데 사용된 도구·기기와享受될 수 있는 시청각 자료	근대과학기술과 공업화의 사회활동으로의 커다란 영향을 고려하여, 역사자료에 관련된 지정기준의 5분야(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물)에 과학기술을 덧붙이는 것이 적당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유산	근대에는 다수의 토목구조물이 건설되었으며, 지정기준에 명확하게 자리매김하였다.
시기	생활문화·기술의 성격에서 시대를 나누는 것이 곤란	페리 내항이후 개국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결까지	제2차 세계대전 종결까지로 하는 것이 적당	건설 후 50년의 경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
대상분야	1) 전통적 생활문화·기술의 계승과 변용 2) 해외문화의 이입 3) 일본과 서양의 절충 문화의 전개 4) 과학기술의 생활문화화	1) 정치-입법, 행정, 사법, 외교, 군사, 기타 2) 경제-토지제도, 금융, 농림업, 수산업, 광업, 건설업, 공업, 산업, 교통, 통신 3) 사회-사회 생활·복지·운동, 종교, 재해, 전재 4) 문화-교육, 학술, 출판, 예술, 스포츠 5) 과학기술-자연과학, 공학, 기술 6) 인물-상기 각분야, 기타분야의 인물로 외국인 포함	1) 경제-①광업 ②에너지 산업 ③중공업 ④경공업 ⑤교통·운수·통신업 ⑥상업·금융업 ⑦농림 수산업 2) 사회-⑧사회 3) 정치-⑨정치 4) 문화-⑩문화 5) 기타-⑪기타(①~⑩에 속하지 않는 분야)	1) 산업관계-광산, 에너지 기계통, 각종공업, 상업, 금융 등 2) 교통관계-도로, 철도, 교량, 운륜(해운) 등 3) 토목관계-항만, 관개, 운하, 냅, 상하수도 등 4) 기타-근대화의 자료가 되는 물건 5) 1)~5)와 일체화된 물건
선택기준	1) 전통적 생활문화·기술의 연장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 2) 해외문화가 이입된 것 3) 절충적 문화의 전개로 부터 생긴 것 4) 일상생활 가운데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도구·기기와享受될 수 있는 시청각 자료	1) 공장 등의 설비와 대형의 기계, 기구류와 설비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2) 대량 제조된 공산품 3) 산업디자인에 기초한 제품 4) 신문, 잡지등의 문자정보자료가 대량으로 제작·유통된 것 5) 시청각미디어에 관한 자료 6)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자료가 수입된 것	1) 일본의 근대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유적이며, 국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 2) 유적이 역사상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며, 학술상 가치가 큰 것	1) 서양의 건설기술이 이용된 건조물에 한정하지 않고, 일본의 전통적 기술에 의한 것도 보호 2) 건축물 및 토목구조물과 일체를 이루어 그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가구·집기, 기계·설비, 설계도서 등에 대해서도 보호
선택시고려사항	1) 종래의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기록작성의 수법으로 대응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분야를 확대하고, 종래 대응이 곤란했던 분야에 대하여도 지정 기준의 개정 등을 포함한 대응책 검토 2) 동일규격의 대량생산되는 등 종래의 것과는 다른 다양한 보호수법 검토 필요	1) 공장 등의 설비와 대형의 기계류에서 그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일부분이어도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 2) 현재 인정받지 못한 것 중 실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고려 3) 대량 생산되어 유통한 제품 등은 유연한 보호를 고려 4) 제품의 기능과 정보의 전달과 결부된 디자인의 경우 계통적인 보호를 고려 5) 집적된 자료는 자료전체의 보호를 고려 6) 분산 보관된 역사자료는 전체의 보호를 고려	1) 역사 사상과 그것을 표상하는 유적이 직접 또는 관련하고 있는 것 2) 동종의 유적이 복수일 경우 전국적 견지와 보존상태를 감안 3) 국민적 이해를 얻어내기 쉬운 것 3) 종교 등에 관한 유적의 경우 표창하는 등, 특정의 관계자 및 단체의 특별한 이해관계를 고려 4) 개인의 유적의 경우 표창하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를 고려	1) 건축물은 일정한 비율(원칙 3/4정도)로 외관이 보존된 것 2) 토목구조물은 부분적으로 보존되어 있어도 가치인정 3) 동종다수의 경우 전형적인 것, 선구적인 것, 완성도가 높은 것, 지역적인 특성과 군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고려 4) 지정 후 문화재로서 소유자, 관리자, 관계자 등의 합의를 통한 것 5) 사적, 미술공예품, 역사자료 등과 관련된 것은 연휴와 종합적 보존을 고려할 것
조사방법	지속적인 소재의 조사	1) 소재상황조사 2) 상세조사대상의 선정 3) 상세조사와 조사보고서 작성	1) 소재조사 2) 상세조사	1) 1차조사 2) 2차조사 3) 3차조사

기술·산업기술 등이 1950년대 후반에 그 기초를 둔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건조물분야에 있어서는, 초기는 근대의 특질을 가진 건조물이

건설되기 시작된 시기, 즉 건축·토목에 관한 서양기술의 도입을 시작했던 시기로 설정하며,終期는 건조물로서의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를 확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다.

### 3-2. 선택기준 및 고려사항

근대문화유산의 선택기준은 일본의 근대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며, 서구에 의해 새롭게 이입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대문화유산의 선택기준 및 선택시 고려사항은 각 분야별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으며, 그 내용은(표 2)와 같다.

### 3-3. 전국적 조사의 시행

#### (1) 생활문화·기술분야

본 분야의 자료는 계통적으로 남겨져 있는 것은 적고, 그 소재에 대해서도 단편적으로 밖에 파악되고 있지 않아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소재하는 자료의 조사가 요구되며, 영상·음향기록 등을 통한 방법을 효과적으로 보고 있다.

#### (2) 미술·역사자료분야

과학기술·산업기술에 관한 역사자료수집의 긴급성에 따라 1997~1999년도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실시한다.

① 소재상황조사: 근대역사자료의 소재에 관한 정보를 문헌과 기존조사 등에 의하여 파악하고, 리스트를 작성한 뒤, 필요에 따라 소재의 확인 등을 행한다.

② 상세조사 대상의 선정: 각 도도부현의 관내분(官內分) 리스트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장래 보존·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정한다.

③ 상세조사와 조사보고서 작성: 상세조사 대상자료에 대한 상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 (3) 기념물분야

1996년부터 약 8년 계획으로 소재조사·상세조사의 2단계로 시행하고 있다.

① 소재조사: 1996~1998년까지 매11분야<sup>6)</sup> 중 년 3~4분야씩 실시

6) ①광업 ②에너지산업 ③증공업④경공업 ⑤교통·운수·통신업 ⑥상업·금융업⑦농림수산업 ⑧사회 ⑨정치 ⑩문화⑪기타  
(⑪~⑩에 속하지 않는 분야)

②상세조사: 각 분야별로 제1차 년도에 검토위원회에서 상세조사 대상을 선정, 제2차 년도에 조사의 실시, 제3차 년도에 조사보고서의 작성과 보존을 요하는 대상의 선정 등으로 3년 계획을 한다. 1997년 이후 2003년 사이에 소재조사가 종료한 분야 중에 2~3분야씩 연차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 (4) 건조물분야

근대의 건조물은 이미 건축사(建築史)와 토목사(土木史) 등의 학문분야<sup>7)</sup>에서 많은 유산이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귀중한 것으로 입증되어 문화재로 등재되어 왔었다. 또한 문화청은 근대화유산을 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고 미리 조사<sup>8)</sup>를 실시하여 현상의 파악과 동시에 보호가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중요문화재로 지정, 혹은 1996년 10월부터 발족한 문화재등록제도에 의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근대의 산업, 교통, 토목에 관한 유산 중, 건조물(건축물, 토목구조물, 기타 공작물)을 주체로 보존상황을 파악하며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1차 조사: 해당 건조물 리스트 작성을 위한 조사<sup>9)</sup>를 행한다. 조사는 각 시정촌 교육위원회에 의뢰한다.

② 2차 조사: 1차 조사에서 확인된 물건 중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에 대해서 1차조사의 확인, 유구의 연혁, 가치평가, 개략도, 보존상태조사 및 사진촬영 등을 행한다.

③ 3차 조사: 2차 조사 대상물건에서 중요 유구를 선정하고, 2차조사의 확인, 역사조사, 실측 및 사진촬영, 배치도, 평면도 등의 작성, 가치평가를 해서 조사표를 작성한다.

## 4. 근대문화유산의 지정현황

### 4-1. 유형문화재의 지정현황

일본 문화재 보호법은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7) 일본건축학회에서는 1970~1980년대에 걸쳐서,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건조물의 조사를 행하여 「일본근대건축총람」(1978년)을 정리하였다. 또한, 토목학회에서는 1970년 후반부터 토목사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그 성과가 「동학회 토목사 연구위원회 회지」(현재는 토목사 연구)에 발표되어, 보존에 주력하고 있다.

8) 1990년도부터 도도부현(都道府縣) 단위에서 근대화유산 종합조사를 개시하였다.

9) 명칭,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연대, 현재의 상황, 현상사진 등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및 「전통적 건조물군」으로 정의하고, 이들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하여 중점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문화재 중 유형문화재는 유형의 역사적 소산이며, 역사상·예술상·학술상 가치가 높은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조물」과, 회화·공예품·조각·서적·전적·고문서·고고자료·역사자료 등을 총칭하는 「미술공예품」으로 구분된다.

건조물로서의 근대건축은 근세이전과 달리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어 지정되고 있다. 최근 들어 건축뿐만 아니라, 건조물의 범위를 토목·교통·항만 등 지역적 범위로 넓혀가면서 「근대화유산」이라는 명칭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또한 보호와 활용이 특히 필요한 수많은 근대의 건조물을 위해 등록유형문화재로 보호하고 있다.

### (1) 건조물-근대화유산

근대건축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종교·주거·학교·문화·관광청사·상업 및 기타로 구분하며, 수도·철도·발전·항만·운하·광업 등의 토목구조물과 관계된 것과 과학산업용 구조물 등을 일컬어 「근대화유산」이라는 종류로 구분하였으며, 1999년 4월 1일 현재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총 9건에 이르고 있다.(표 3·4)

### (2) 미술공예품

미술공예과에서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의」를 계속적으로 개최하여 협의·검토를 행한 뒤, 1994년 10월에 지정기준의 일부개정(문부성 고시 제185호)을 보았으며, 근대의 과

학·산업기술에 관한 문화유산의 지정보존에 착수하여 일본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한 6건의 미술공예품

표 3. 국보·중요문화재(건조물) 시대별 지정동수

時代 國分 種類別	件數	棟數								計	
		近世以前				近代					
		飛鳥	平安	鎌倉	室町	桃山	江戸	明治	大正		
神社	(36) 547	(2) 4	(14) 45	(6) 308	(9) 153	(27) 556	*1			(58) 1,067	
寺院	(150) 826	(26) 28	(23) 35	(54) 147	(29) 340	(12) 124	(12) 395	*4		(156) 1,073	
城郭	(8) 52				(12) 115	(4) 118		*1		(16) 234	
住宅	(12) 92			(2) 7	(7) 25	(11) 115				(20) 147	
民家	(0) 315				3	1	561	*66	*9	(0) 640	
其他	(3) 187	1	12	122	53	11	56	*1		(3) 256	
小計	(209) 2,019	(26) 29	(25) 51	(68) 314	(37) 711	(41) 429	(56) 1,801	73	9	(253) 3,417	
宗教	12							11	1	12	
住居	40						**2	68	11	81	
學校	30							49	5	55	
文化	17							21	5	26	
官公廳의 舍	17							16	5	21	
商業· 業務	12							10	2	12	
近代化· 遺產	9							7	1	9	
其他	11							8	4	13	
小計	148							190	32	229	
合計	(209) 2,167	(26) 29	(25) 51	(68) 314	(37) 711	(41) 429	(56) 1,803	263	41	(253) 3,646	

주 ①( )은 국보

② \*은 1件이 複數棟으로 구성된 중요문화재로, 중심건물(동)이 근세이전에 지어진 것

③ \*\*은 1件이 複數棟으로 구성된 중요문화재로, 중심건물(동)이 근대에 지어진 것

④ \*은 근대화유산은 건물 동수임.

표 4.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근대화유산(1999. 4. 1. 현재)

번호	소재지	명칭	연대	분류	토목구조물 등	지정일자
1	秋田縣秋田市	藤倉水源地水道施設	明治40년	水道	댐, 교량(점검용)	1993. 8.17
2	群馬縣松井田町	碓氷峠鐵道施設	明治26년	鐵道	교량5기, 隧道10기	1993. 8.17
3	長野縣南木曾町	讀書發電所施設	大正11년	發電	발전소건물, 반입용도로, 다리(桃介橋), 水路橋	1994.12.27
4	三重縣四日市市	四日市旧港港灣施設	明治27년	港灣	방파제 2기	1996.12.10
5	埼玉縣深谷市	日本煉瓦製造株式會社旧煉瓦製造施設(호프만窯·旧事務所·旧發電所·備前渠鐵橋)	明治22년	化學 窯業 製紙	연와제조	1997. 5.29
6	富山縣富山市	富岩運河水閘施設	昭和9년	運河	감문, 방수로, 호안	1998. 5. 1
7	岐阜縣八百津町	旧八百津發電所施設	明治44년	發電	발전소 건물 2동	1998. 5. 1
8	福岡縣大牟田市	三井石炭礦業株式會社三池炭礦旧宮原坑施設(第2堅坑櫓·同卷揚機室等)	明治34년	礦業	석탄	1998. 5. 1
9	熊本縣荒尾市	三井石炭礦業株式會社三池炭礦万田坑施設(第2堅坑櫓·同卷揚機室·倉庫 및 펌프실·사무소외)	明治41년	礦業	석탄	1998. 5. 1

※조사중 1999. 4. 1 이후 廣島縣吳市의 本壓水源池堰堤水道施設과 大分縣竹田市의 日本溜池堰堤水利施設 2건이 새로 지정됨.

을 지정보호 하고 있다.(표 5) 이 중 여섯 번째의 木村嘉平 관계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제로서 일본 근대기의 전기통신·교통사·공업기술·인쇄분야에 있어 제조과정·전개경위 등이 명확하여 근대과학·산업기술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유산들이다.

### (3) 등록유형문화재

1996년 10월 1일에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조치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 문화재건조물을 文部大臣이 문화재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문화재 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등록제도는 최근의 국토개발, 도시계획의 진전, 생활양식의 변화 등에 의하여 사회적 평가를 받자마자 소멸 위기에 처한 다종다양 내지는 대량의 근대 건조물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재 건조물을 후세에 꼭넓게 계승하기 위하여 신고제와 지도·조언·권고를 기본으로 하는 보호조치를 강구하는 완화된 제도이며, 종래의 지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sup>10)</sup>

등록제도를 도입할 때, 문화청은 「일본근대건축총람」<sup>11)</sup>과 토목학회의 조사, 혹은 문화청이 실시하고 있는 「근대화유산 종합조사」와 「근대화풍(和風)건축 종합조사」를 기초로 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어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시 되는 것」을 2,500건으로 보고있다. 수적으로는 연간 목표를 거의 달성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등록수(영국은 44만, 미국은 약 5만 5천)에 비하여 절대수가 부족하다. 또한, 등록유형문화재인 건조물이 소재하는 시정촌(市町村)수는 257개로써, 전체의 1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4-2. 기념물의 지정현황

일본 문화청에서는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종류에 따라 「史跡」, 「名勝」, 「天然記念物」로 지정하고, 이들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각각 「特別史跡」, 「特別名勝」, 「特別天然記念物」로 지정하고 있다.

#### (1) 근대의 지정 사적

일본은 1957년 6월 철광석을 원료로 하는 일본 최초의 양식고로인 橋野高爐跡의 지정을 시작으로

50년대에 3건, 60년대에 7건, 70년대 1건과 80·90년대에 각각 4건씩 총 19건을 지정 보호하여 오고

표 6. 중요유형문화재(미술공예품)-1996년 현재

	명 칭	사 진
1	• 엠보싱·모르스 전신기 일본 전기통신 발전의 원점 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	
2	• 一號 기관차 철도관계자의 노력에 의해 빨리 보존될 수 있었으며, 일본 근대교통사의 여명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3	• 수삭반(堅削盤) 일본 최초의 양식 공장(洋式工場)에서 사용된 공작기계이어서 근대공업사상 주목된다.	
4	• 스텁햄머 오랜 동안의 사용때문에 가동부는 수선되었지만, 전래과정이 명확한 공작기계로서 일본의 근대산업기술사에 귀중하다.	
5	• 스탠호프 인쇄기 官府 인쇄소에서 실제로 사용된 역사적 경위를 갖고 있고, 일본에 있어서 근대적 인쇄출판의 여명기를 알리는 양식인쇄기로서 귀중하다.	
6	• 木村嘉平 관계자료 薩摩藩主·島津齊彬의 명령에 의하여 木村嘉平이 네델란드인에게 배우고서, 창의적으로 공부하여 완성한 활자 및 인쇄 기구류로서 일본 인쇄문화사상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표 5.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 등록건수

등록수	1,103건(524개소)		
관계 시정촌(市町村)	257시정촌(구)		
관계 도도부현(都道府縣)	47도도부현		
시대별			
강호	명치	대정	소화
80	314	345	364
종별			
산업	교	관공	학
1차	2차	3차	생활
31	107	137	38
			문화
			관련
			복지
			주택
			종교
			치산
			기타
			치수
			13

건축물	토목구조물	기타의 공작물
914	54	135

\* 종별 중 「생활관련」은 전기·가스·수도시설을 표시.

10) 「我が國の文化財保護施策の概要」, 문화청, 1999, 21쪽

11) 일본건축학회 편, 1980년

표 7. 사적 지정기준의 개정내용

구 기준 (1951.5.10 문화재 보호위원회 고시 제2호)	① 특별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사적명승천연기념물 지정기준(1995.3.6 일부개정 문부성고시 제24호)
1. 패총, 유물포함지, 住居跡(수혈주거跡, 敷石주跡, 동혈주 거跡 등), 고분, 神籠石 기타 이와 비슷한 유적	1. 패총, 住居跡, 고분, 기타 이와 비슷한 유적
2. 郡城跡, 宮跡, 大宰府跡, 國郡廳跡, 城跡, 防壘, 古戰場, 기타 정치와 관련된 유적	2. 郡城跡, 國郡廳跡, 城跡, 官公廳, 戰跡, 기타 정치와 관련된 유적
3. 社寺跡, 豪은 旧境內, 經塚, 마애불, 기타 제사와 신앙에 관련된 유적	3. 社寺跡, 豪은 旧境內, 기타 제사와 신앙에 관련된 유적
4. 聖廟, 藩學, 鄉學, 私塾, 文庫, 기타 유히에 관한 유적	4. 학교, 연구시설, 문화시설, 기타 교육·학술·학예에 관한 유적
5. 藥園跡, 자선시설, 기타 사회사업에 관한 유적	5. 의료·복지시설, 생활관련시설, 기타 사회·생활에 관한 유적
6. 關跡, 一里塚, 檻木街道, 條里制跡, 堤防, 窑跡, 市場跡, 기타 산업 교통 토목에 관한 유적	6. 교통·통신시설, 치산·치수시설, 생산시설 기타 경제·생산활동에 관한 유적
7. 분묘 및 碑	7. 분묘 및 碑
8. 舊宅, 圈池, 井泉, 樹石 등 특히 유서 있는 지역의 類	8. 舊宅, 圈池 등 특히 유서 있는 지역의 類
9. 외국 및 외국인에 관한 유적	9. 외국 및 외국인에 관한 유적

있다. 기능별로는 관사·학교·은행·세관·우체국에서부터 공장·정차장·어장시설, 그리고 등대와 히로시마 원폭 도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표 8)<sup>12)</sup>

#### (2) 지정기준의 개정

기념물과에서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보고를 기초로 현행 지정기준<sup>13)</sup>을 개정하였다. 현행은 「일본의 역사의 이해를 위해서 빠뜨릴 수 없고,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을 사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적 지정의 목적과 그 대상의 의의에 있어서 특정한 시대를 한정한 것이 아니고, 선사 이래의 어느 유적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할 기준이다. 개정된 지정기준은 종전과 달리 근대를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어휘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표 7)에서, 2항목의 官公廳과 戰跡, 4항목의 학교·연구시설·문화시설, 5항목의 의료·복지시설 및 생활관련시설, 6항목의 교통·통신시설, 치산·치수시설 및 생산시설 등이 있다.

### 5. 근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사례

#### 5-1. 근대 산업유산의 현상과 보존일본의 근대화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 산업·교통·토목에 관

12) 磯村 幸男, 「일본의 근대유적 보호」(문화청), 산업유산(초판), 1999. 9. 25, 12쪽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근대역사기념물·건축물을 사적으로 지정(94건)하여 보존해 오고 있다.)

13) 特別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1951년 5월 10일 문화재보호위원회 고시 제2호)

표 8. 근대의 지정 사적목록

사적명	소재지	지정일자
1 橋野高爐跡	岩手縣 釜石市	1957. 6
2 舊集成館	鹿兒島市	1959. 2
3 鹿兒島紡績所技師館	鹿兒島市	1959. 2
4 舊新橋停車場跡	東京都 港區	1960. 5 1996.12
5 開拓使禮幌本廳本廳舍·舊北海都廳本廳舍	禮幌市	1967.12
6 舊中込學校	長野縣佐久市	1969. 4
7 舊見付學校·磐田文庫	靜岡縣 磐田市	1969. 4
8 小菅修船場跡	長崎市	1969. 4
9 舊新潟稅關	新潟市	1969. 6 1980. 2
10 神子元島燈臺	靜岡縣 下田市	1969. 7
11 舊堺燈臺	大阪府 堀市	1972. 7
12 舊余市福原漁場	北海道 余市郡 余市町	1982. 2 1987.12
13 琴似屯兵村兵屋跡	禮幌市	1982. 5
14 舊島松驛遞所	北海道北廣島市	1984. 7
15 松岡開墾場	山形縣 東田川郡羽黑町	1989. 8
16 舊横浜正金銀行本店	橫濱市 中區	1995. 6
17 原爆 도움	廣島市 中區	1995. 6
18 琵琶湖疎水	滋賀縣 大津市, 京都市	1996. 6
19 舊留萌佐賀家漁場	北海道 留萌市	1997. 3

계된 구조물이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물은 일본의 근대화를 담당하였으면서도 현재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대화 유산으로서 물건의 지정 및 보존을 위한 조사 및 이를 기초로 한 지정을 행하여, 현재 까지 藤倉水源地水道施設(秋田縣, 그림 7), 離氷峠철도시설(1893년, 群馬縣, 그림 4), 讀書發電所(1923, 長野縣, 그림 1), 白水溜池堰堤水

利施設(大分縣) 등을 중요문화재로 지정하였다.<sup>14)</sup>

산업유산은, 다종다양한 소재와 공법을 이용하여 건설된 대규모 구조물이, 각기 專用의 기능을 맡으면서 복잡 다양한 시스템으로 연휴하여 거대한 산업시설을 구성하고, 지역의 역사와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색은 유산으로서의 매력원이며서도 보호가 어렵게 되는 요인인기도 하다. 산업구조물의 보호를 둘러싸는 다양한 과제에 대한 각지의 사례와 특성은 아래와 같다.

제 1특색은, 과학기술의 진전 및 산업의 부침과 업태 전환에 수반하여 단기간에 간신히 개선되는 특성이 있다. 지속적인 사용을 연구하고 설비의 개선 등이 요구됨. 예) 讀書發電所(그림 1)

제 2특색은, 광대한 산업기술의構內에 다종다양한 시설이 존재. 예) 小坂礦山<sup>15)</sup>(그림 2)

제 3특색은, 지역의 역사와 경관으로서 정착하여 사람들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금후의 마을 만들기를 진행할 때도 핵으로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예) 離水峠철도시설(1893년)<sup>16)</sup>(그림 4)

제 4특색은, 대규모적인 이유로 보존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으나, 横浜 조선소 2호 독크<sup>17)</sup>는 보존이 실현된 전형적인 예이며 인접하는 초고층빌딩과 일체적인 기초구조로 하는 것으로서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9)

제 5특색은, 다양한 소재와 공법이 조합되어 하나의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각 부위의 열화와 腐朽 정도가 다른 경우, 보존상황에 따라 보호방법이 필요. 예) 桃介橋<sup>18)</sup>(그림 3)

제 6특색은, 구조물에 비치된 설비와 내부에 놓인 기계 등이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예) 熊本大學旧기계실험공장(그림 8)

八百津발전소, 三池탄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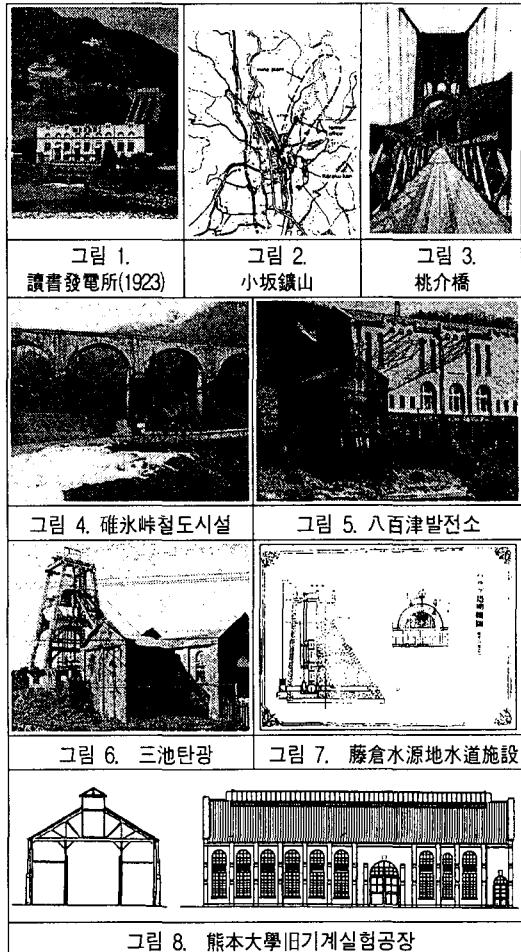
14) 清水眞一, 「産業建造物保護の取組み」, 문화청, 近代の文化遺産の保存と活用, 東京文化財研究所, 1998년 11월 심포지움자료집, 44~46쪽

15) 각종의 공장·창고를 시작으로, 정수장·발전소·사무소·철도시설·후생시설 등 19세기 말의 시설들이 현존.

16) 地元자치체가 인수 후 유산의 매력을 활성화한 遊歩道로서, 철도노선 폐지후 마을의 재활성화에 성과가 있었다.

17) 인접하는 초고층빌딩과 일체적인 기초구조로 하여 안전성을 도모하며, 대규모 보존이 실현된 전형적인 예이다.

18) 콘크리트 조의 主塔에서 와이어를 끌어 목재의 바닥을 묶는 구조이며 와이어와 목재바닥은 노후화하여 형식복원을 하고, 전체보존을 위하여 목재바닥은 일부를 잘라내어 별도보존하고 있다



산업유산으로서의 보존은 다종다양한 시설과 기계 등의 설비를 종합적으로 보존하고, 기술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 및 사람들의 생활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위의 사례들은 각각의 과제를 해결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것들이다.

보존방식과 수법에 있어서는, 건축작품과 미술공예품에 대한 그것과 비교하여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획일적인 수법으로 대처하는 것은 보존을 위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보존의 기술적 가능성, 보존방법과 전시·공개방법의 관련, 보존을 동기 부여할 수 있는 활용방법의 검토 등, 복잡한 과제를 조정하는 가운데 유산의 특성에 따라 보호의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sup>20)</sup>

19) 清水眞一 외 3인, 「歴史ある建物の活かし方」, 學藝出版社, 1999. 7. 25, 12~16쪽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20) 清水眞一, 「産業建造物保護의 取組」, 문화청, 일본

표 9. 문화재로 지정된 근대건축의 보존·활용 사례<sup>19)</sup>

번호	건물명	활용방법	구 용도	보존형태	비 고	유형
1 2 3 4 5	澁谷家 주택 · 彌生正綠館 石場家 주택 道後 우천보관 통경대학공학부 1호관 북해도대학 농학부 식물원 박물관 본관	주택 병용주택 욕장 학교 박물관	양관 상가 목욕탕 학교 박물관	부분 · 별동 전면 · 현지 전면 · 현지 전면 · 융합 전면 · 현지	등록문화재	계속형
6 7 8 9 10	항(はん)亭 旧 杉家 주택 旧 中家 주택 旧 松本家 주택 豊平館	고치집 커뮤니티시설 커뮤니티시설 회원용 회관 결혼식장	상가 전통주택 전통주택 호텔	부분 · 외관 전면 · 현지 전면 · 현지 전면 · 현지 전면 · 이축	등록문화재	전용형 1 (주택)
11	갤러리 · éf	갤러리	창고	부분 · 현지	등록문화재	전용형 2 (창고)
개별 활용	구 삿뽀로 농학교 연무장 구 岩科학교 이와떼(岩手)대학 농학부농업교육자료관 나라 여자대학 구 본관	문화시설 교육자료관 교육자료관 자료관 등	演武場 학교 학교 학교	전면 · 현지 전면 · 현지 전면 · 현지 전면 · 현지	시계대	전용형 3 (학교)
16 17 18 19 20 21 22 23 24	구 旭川偕行社 구 나가사끼 영국영사관 구 고오베 거류지 15번관 구 아끼다(秋田)은행본점 본관 이와떼(岩手)은행 中橋지점 구 香港上海은행 나가사끼 지점 기념관 나고야시 시정자료관 구 하야쓰(八百津)발전소자료관 구 마모도(態本)대학 공학부 교육자료관	미술관 미술관 레스토랑 자료관 은행 은행 기념관 자료관 자료관 학교	장교 클럽 영사관 영사관 은행 은행 은행 한동청사 발전소 학교	전면 · 현지 전면 · 현지	계속형*	전용형 4 (기타)
25 26 27	구 동경음악학교 악당 飯高寺 강당 浜寺 공원역	음악당	학교, 음악당	전면 · 현지	축소	부활형
지역 활용	28 29 30	白川村荻町 지역 美山町北 접락 上芳我家 주택	콘서트장 갤러리 등	강당 역사 일부	전면 · 현지 전면 · 현지	이벤트형
		농촌집락 농촌집락 공개시설	민가군 민가군 정가	전면 · 현지 부분 · 외관 전면 · 현지	중요전건지구 중요전건지구	지구형 (地區形)

### 5-2. 근대 과학·산업기술의 보존

근대 과학·산업기술에 관한 문화유산의 지정 보존 현황은 1996년 현재 6건이 지정되었다는 것을 앞서 서술하였다. (4-1,(2))

향후 보존·활용을 위해서는 첫째로, 유산의 손실을 방지 및 공유의식의 고취를 위해서 일시 보존고(保存庫) 및 공개시설의 확보방안이 요구되며, 둘째로 수리기술자의 확보와 후계자 양성이 필요하다. 세째로, 기기류 등의 특성과 기능 및 구조 등의 이해를 위한 동체보존이 효과적이며, 옥외에서의 보존대책 등이 과제이다.

### 5-3. 근대건축의 보존과 활용

현존하는 근대건축의 수는 매우 다량이며, 또한 보존 및 활용사례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 보존 및 활용의 사례는 크게 개별활용·지역적 활용과 같이 규모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지속형, 전용형, 부활형, 이벤트형, 지구형과 공개형 등의 활용유형이 있다.

활용방법, 구 용도, 보존형태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례로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최근 문

화재로 지정된 대표적인 근대건축의 활용사례는 (표 9)와 같다.

### 5-4. 요코하마 미라토미라이 21단지내의 도크유적 보존·활용사례<sup>21)</sup>

#### (1) 근대유적의 지정경위

구 요코하마 도크 주식회사 제 2 호 도크(船渠)는 고도정보사회의 거점으로 개발된 요코하마시 서구의 임해 매립지에 위치<sup>22)</sup>하면서, 랜드마크 타워의 부지 내에 보존되어 있다.

1859년 요코하마의 개항이래, 본 도크는同年 1 월에 착공되어 다음해 12월에 준공되었으며, 1902년 5월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1935년 요코하마 도크 주식회사가 미쓰비시(三菱) 중공업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요코하마 조선소로 되었으며, 1973년 제2호 도크의 기능이 정지될 때까지 많은 선박의 수리가 행해졌었던 장소이다.

1988년 「구 요코하마 제2호 도크 조사」를 개시

21) 文化財, 「文化廳文化財保護部監修」, 1998년 2월호

22) 위치: 神奈川縣 横濱市 西區 미나토미라이 2 정목 2번 1호, 소유주 및 관리자: 三菱地所株式會社

하면서, 보존이 용시 구조상 안정성과 안전성의 검토 및 제2호 도크의 학술적인 평가를 행하는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 결과 랜드마크 타워건설과 같이 보존할 것을 결정하고, 1994년 5월 광장·이벤트 스페이스인 「도크야드 가든」으로 재생하여 동년 7월부터 일반이 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존 개수 후 구 제2호 도크의 규모는 총 길이 107m, 상단 폭 29m, 깊이 약 10m이었다. 석재는 小松石이고, 내벽은 방형(方形)의 담들은 돌을 쌓고 있으며, 수직에 가까운 벽면은 브라프 쌓기라 불리우는 돌 1본씩을 떠받치는 공법이 도입되었다.

### (2) 보존·활용계획

2호 도크는 랜드마크타워의 개발 중에서 오목한 모양의 거대한 석조 공간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쉬운 광장으로서 정비하며, 주위에 배치된 점포군과 연계한 휴게와 활발한 장소임과 동시에 문화예술 활동과 각종 이벤트의 개최 등 다양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역사적 공간을 누구라도 이용 가능한 광장으로 하기 위한 활용방안이 도입되었다.<sup>23)</sup>

### (3) 보존의 의의

2호 도크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근대문화 유산의 보존과 재생에 있어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즉, 근대문화유산이 역사적·과학기술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도시의 형성과정 뿐만 아니라 랜드마크와 상징으로도 중요한 자원임을 보여준 것이다.

그 의의로서 첫째는, 도심이라는 입지, 규모와 사업비, 보존수법 등 일본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특히 변화가 심한 대도시에서의 보존 모델이 되었다. 둘째로, 토목·산업시설이

시대와 함께 본래의 기능을 잃어도 현 시대에 맞게 재생·재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공간성과 형태적·기술적 가치는 남아 있어도, 계단과 개구부의 신설 등 변경을 가져온 「활용을 주로 한 보존」을 중요문화재로 평가한 점이 새로운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로 대규모 보존사업을 미쓰비시라는 민간기업이 이루어 냈다는 점이다. 넷째로,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보존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는 향후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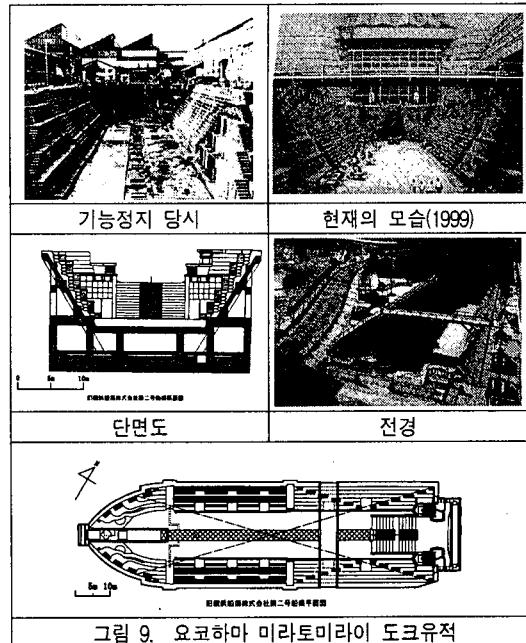


그림 9. 요코하마 미라토미라이 도크유적

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다. 자치체가 모든 권한과 재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마을 만들기의 비전을 공유화하는 관계자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지역 만들기로서 명확한 자리매김을 하여 시민·기업·행정의 협력체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sup>24)</sup>

### 5-5. 근대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군마현(郡馬縣)<sup>25)</sup>의 사례

막말(幕末)부터 명치·대정·소화 시기의 종전(終戰)까지 근대적인 수법으로 만들어진 건축물과 토목구조물 및 근대의 각종 문물 등의 역사유산을 보존하고, 장래의 지역 만들기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기 시작하자, 군마현은 전국에서 최초로 근대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각종 심포지움을 개최하면서 지역 만들기에 힘을 쓰기 시작하였다 지역이다.

군마현의 조사는 동경대학 명예교수이며 건축사가

24) 北澤 猛, 文化財, 「旧横浜船渠株式會社第2号船渠 보존의 의의」, 文化廳文化財保護部監修, 1998년 2월호, 7~11쪽.

25) 군마현은 동경에서 북동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자원과 땅·온천 등 풍부한 자연으로 에워싸여 있어 관광자원도 풍부한 곳이다. 명치유신 이후 1871년 “군마현”이라는 명칭으로 개칭된 이후 수많은 근대적 문물이 이 곳으로 들어 왔었다.

23) 深堀 登, 文化財, 「旧横浜船渠株式會社第2号船渠의 보전활용계획에 대하여」, 文化廳文化財保護部監修, 1998년 2월호, 1~15쪽

인 무라마츠(村松貞次郎)교수를 조사 주임에 맞이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1990년부터 1991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1990년에 시행된 제1차 조사(소재조사)와 제2차 조사(현지확인 조사)를 통하여 군마현의 근대화유산 약1,000건을 목록화 하였으며, 1991년도의 제3차 조사(상세조사)에서 약 120건을 결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결과, 군마현에는 철도교통 관계의 유산, 양잠·제사·섬유 등 양잠업 관련의 유산이 특히 많게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전력·토목·광공업·상업·행정·교육·생활등 각 분야에서도 지역과 관련한 근대의 다양하고 독자적인 특징을 끌어낼 수 있었다.

군마현의 선구적 역할은 근대화유산의 종합조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근대문화유산의 분류·종류 구분이란 점에서 이후에 계속되는 조사의 샘플로서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993년 8월 17일 磐永峠鐵道施設(그림 4)이 근대화유산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요문화재에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근대화유산현·군마」를 알리는 계기가 되다.

「근대화유산 종합조사」(군마현)에 소개된 유산은 「장르별」, 「지역별」, 「JIS 코드순의 인덱스」로 분류되어 인터넷에 올리면서 전국적인 홍보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장르별 구분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구분 및 내용으로 군마현만의 독자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26)</sup>(표 10)

표 10. 군마현 근대문화유산의 장르별 구분

구분	내용
비단	실크 지방으로서 당시의 유구(遺構)가 군마현에는 풍부하게 남아 있다. -제사(5), 섬유·양잠(4)
산업	군마현에는 실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대적 기간산업이 들어섰으며, 교통의 요충지로 다양한 교통 기관 및 국가시설이 정비됨. -농림업(2)·군사(2)·교통(9)·광공업(2)·전력(3)·토목(2)
생활	많은 근대건축물 및 시설을 통하여 모던 풍인 서양 문명에 동경한 당시의 생활을 알 수 있는 아이템. -행정(6)·상업(2)·생활(5)
문화	명치기의 군마현에는 전국적으로 드물게 보이는 크리스트 교회가 건설되었으며, 신자의 신앙 운동도 활성. -문화(5)·교육(3)

※( )은 각분류별 지정건수를 나타낸 숫자임

## 6. 근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방안 및 향후대책

### 6-1. 관련법령의 검토

#### (1) 문화재 지정제도

국가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는 그 종류에 따라 현상변경 등에 일정한 제한이 부과되는 한편, 수리 등에 대한 국고보조를 행하는 등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조치가 강구되는 가장 근본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근대문화유산의 다양한 성격 및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정 대상으로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즉, 기념물 및 건조물에 대해서는, 이미 취합된 보고에 기초를 두어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 사적과 중요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별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사적명승천연기념물 지정기준」 및 「국보 및 중요문화재 지정기준」이 각각 개정되어 근대문화유산의 일부에 대한 지정이 행해질 수 있게 되었다.

#### (2) 문화재 등록제도

문화재 지정제도의 보완으로서 신고제와 지도, 조언, 권고를 기본으로 하는 완화된 보호조치를 강구하는 측면에서 1996년 6월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등록의 대상을 유형문화재중 건조물만으로 하고 있으며, 건조물에는 가옥과 창고 등의 건축물 이외에 다리, 댐, 터널 등의 토목구조물, 연돌 등의 기타 공작물이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은, 근년의 사회경제발전에 따른 국토개발에 의하여 특히 건조물이 파괴될 위기에 처한 것이 많아 다양하고 수많은 근대 건조물에 대해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과, 지방공공단체와 관계학회 등에서 제도의 실현에 대한 강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 (3) 지방 공공단체에서의 보호

종래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만 행해진 문화청 장관의 권한위임 등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도시 및 중핵시의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정촌 교육위원회에서도 조례에 따라 지방문화재 보호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 (4) 중요문화재 등의 활용촉진

소유자들이 국고부담에 의한 공개를 할 때 문화청 장관의 승인행위를 삭제하였고, 중요문화재의

26) 1995년 11월 11일에 군마현 마에바시시(前橋市)에서 행해진 「근대화유산 전국회의」에 소개된 내용의 머리말임.

소유자 및 관리단체 이외의 자가 공개를 행할 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공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해외전시 등을 위한 허가에 대해서도 그 수속절차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6-2. 세계혜택 및 규제·원조사항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서 각각의 맡은 바 역할과 임무를 설정하고 있다. 우선 국가는, 법령의 제정과 문화재의 지정·선정 및 등록과 관련한 제반 행정 절차의 수행, 문화재의 관리·수리·공개 등에 관한 소유자·관리자의 혜택 및 보조, 기타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각종 연구개발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표 11. 지정·등록제도의 비교표

	지정제도	등록제도
개인·법 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문화재(6종류) 중 전형적·대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대상으로 중요문화재 등으로 지정하여 가능한 완전한 형태로 보존·계승하는 것을 목적.	현상변경 등의 신고 제와 지도·권고를 기본으로 하는 완화된 보호조치로서 지정제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대상	① 중요문화재(미술공예품, 건조물) ② 사적명승천연기념물 ③ 중요유형민속문화재 ④ 중요무형민속문화재 ⑤ 중요무형문화재(예능, 공예기술) ⑥ 국보(미술공예품, 건조물) ⑦ 특별사적명승천연기념물	①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
세계혜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양도소득세의 특별공제 -상속세의 경감 -지가세의 비과세 (지가세는 1998년 이후 과세정지) -국정자산세, 특별토지보유세, 도시계획세의 비과세	-대상①에 관계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에 산입되는 금액이 감액된다. -대상①에 해당되는 가옥과 관계된 국정자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시정촌의 실정에 따라 세액의 1/2이내가 감액된다.

지방공공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문화재 보호법의 틀 안에서 각종 조례의 제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입각해 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정 문화재의 관리·수리·공개 등에 관하여 지시·명령·권고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조를 하여야 한다. 국가기관과 달리 문화재보호를 위한 지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마다 문화재의 보전 및 활동상황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에게 각종 세계 우대조치(표 12)를 시행함과 동시에, 문화재의 대상분야에 따라 각종 규제를 가하여 국가적인 문화재에 대한 보호시책을 행하고 있다.

한편 소유자는, 문화재 소유자의 변경, 멸실, 훼손 및 소재의 변경 시 국가에 대하여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관리·수리 및 공개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 6-3. 분야별 보존·활용방안 및 향후 대책

#### (1) 생활문화·기술분야

지정 분야를 민속문화재·무형문화재 등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종래 대응이 곤란했던 분야에 대해서도 지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종래의 지정기준인 전통성·역사성·예술성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른 특질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보호수법의 도입을 검토하며, 관계성정, 지방공공단체, 민간단체와의 연휴협력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 (2) 미술·역사자료 분야

우선적으로, 과학기술과 산업디자인 등에 관한 역사자료의 보존·활용을 급선무로 보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결과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향후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함과 동시에 연구자 및 일반인에게 폭넓게 공개한다.

둘째, 기계류 같이 현재 여전히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능의 유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므로 현상변경과 수리시 유연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소재와 기능을 갖고 있는 역사자료에 대해서는 그 특질에 따른 보존 수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세째, 개인과 기업 등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자료의 보존과 활용은 박물관·미술관·자료관·문서관 등과 공공기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기능확대가 필요하며, 역사자료에 관한 소재정보는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화를 유도한다.

#### (3) 기념물 분야

근대유적이 소재하고 있는 장소는 현재도 생활이 영위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토지 및 건물이용의 변경과 도시 재개발 등 개발수법에 의해 파괴되는 것도 적지 않다. 향후 대책으로서 다음과 같

표 12. 문화재 관계의 세제우대 조치

사항	내용	년도
양도소득의 비과세	개인이 중요문화재로서 지정된 동산 또는 건물을 국가·지방공공단체에 양도한 경우는 비과세.	비과세(소득세) 국비과세 (소득세) 지방공공단체 1972. 4 ~ 2003.12 1975. 4 ~
	중요유형민속문화재 또는 중요문화재에 준하는 문화재를 국가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은 1/2 과세.	1/2과세 (소득세) 1992. 4 ~ 2003.12
양도소득의 특별공제등	개인 또는 법인이 중요문화재로서 지정된 토지 및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을 국가·지방공공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2,000만엔의 특별공제 또는 손실금 산입이 인정된다.	소득세·법인세 1970. 4 ~
상속세의 경감	중요문화재로서 지정된 민가 및 그 부지 중 소유자의 거주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상속 재산 평가액을 감액.	상속 재산 평가액 의 60/100를 감액 1985. 1 ~
지가세의 비과세 (지가세는 1998년 도이후 과세 정지)	중요문화재·중요유형민속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혹은 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한 문화재에 관계되는 일정한 토지, 또는 전통적 건조물군보존지구등의 구역내 일정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지가세를 비부과.	비과세 1992. 1 ~
	동록 유형 문화재에 관계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과세 가격에 산입되는 금액이 감액된다.	과세가격에 산입하는 금액이 토지가액의 1/2 이 경감. 1997. 1 ~
	비과세가 되는 문화재에 준하는 것 중 보존 및 활용의 고려 대상이 되는 문화재에 관계된 토지 등은 과세가격에 산입되는 금액이 감액된다.	과세 가격에 산입하는 금액 이 토지가액의 1/2이 경감. 1992. 1 ~
국정자산세, 특별토지보유세, 도시계획세의 비과세	중요문화재·중요유형민속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로서 지정되고, 또는 중요미술품으로서 인정된 가옥 및 부지에 대해서는, 국정자산세, 특별 토지보유세, 도시계획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1951. 1 ~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내의 전통적 건조물(풍속영업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에서, 문교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자산세, 도시계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비과세 1989. 1 ~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내의 전통적 건조물인 가옥의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市町村의 실정에 따라 고정 자산세의 세액의 1/2 이내가 감액. 또, 전통적 건조물 이외의 건조물 등의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市町村의 실정에 따라 세액이 적당 감액.	1/2 이내를 감액 1998. 1 ~
	동록유형문화재인 가옥에 관계되는 국정자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市町村의 실정에 따라 세액의 1/2 이내가 감액된다.	1/2 이내를 감액 1997. 1 ~

은 사항을 고려한다.

첫째, 근대유적 중 현재도 기능을 잃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것은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고 유연한 수법을 고려하며, 둘째, 사적으로 지정된 유적의 현상변경·규제·수리·활용 등에 대해서는 개개의 유적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며, 셋째, 지정된 사적의 보호·관리에 대해서는 소유자, 관계 지방공공단체, 문학청 등 사이에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을 하고서 해당 유적의 「보존 관리 방침」을 합의해 둘 필요가 있다.

#### (4) 건조물 분야

근대 건조물은, 현대 사회 중에서 기능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 많다. 중요문화재에 대해서도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건조물 본래의 기능을 확보하고 활용하면서 보존해 가는 것이 중요하며,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① 안전성 및 공익성의 확보

##### ② 편리성의 확보<sup>27)</sup>

27) 건축물의 수리 변경 시 패적성을 위한 설비의 설치라든가 용도변경에 수반하는 내장의 변경 시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

#### ③ 다양한 보호제도의 도입

④ 중요문화재의 소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의 검토와 수리 등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기능자의 확보 및 양성이 필요하다.

## 7. 결론

일본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보호 시책의 입안에서부터 향후대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우선적으로,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기존의 전통문화유산과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문화재의 개념으로 통합하려는 것으로서, 역사적 시기와 대상 분야의 차이로 새로운 시기의 설정과 분야가 추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근대기의 방대한 문화 유산에 대한 보존 및 활용에 있어서 다각도로 연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서 전국적

고, 토목 구조물에 있어서 교통량의 증가에 수반하는 교량확폭(擴幅) 등 편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문화청 산하의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락자협의회」를 설치하였고, 근대문화유산을 크게 생활문화·기술, 기념물, 미술·역사자료, 건조물의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부의 분과에 각 분과회를 설치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보호시책을 마련하여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적 조사는 96년부터 8년 계획으로, 각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교육위원회와 관계기관 및 각 전문가와의 협력을 얻어 실시되고 있다.

보존 및 활용에 있어서는 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등록제도의 도입과 다양한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사례에 있어서는 개개의 단위로서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대규모로서 지역과 연계된 것과 지역의 활성화 등으로 확대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 일본의 근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사례를 살펴본 바, 우리 나라의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활용 방안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① 전국적 조사를 통한 정보의 구축 및 정리 우선 과제로서 각각의 대상분야에 대한 소재 상황 등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② 관계부처·기관·단체간 협력시스템 구축 근대문화유산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기업·개인 및 유물의 성격에 따라 관계부처·대학과 박물관 등의 기관과 관련되어 소재함으로 서로간의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국민의 적극적 참여 방안강구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과 문화재에 관한 자원봉사 활동의 장려 등의 다양한 방법과 지역주민들 사이에 지원·협력하는 「문화재 트러스트」등 민간단체의 육성 등에 노력하여 국민의 이해 협력 및 참여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④ 보존·수리를 위한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근대는 과거의 것과 재료 및 공법 등에 있어서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보존 및 수리 등의 기술에 대한 연구와 수리기술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전시 및 공개의 방법을 강구하여 국민에 공개하여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⑤ 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

근대문화유산은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 다수에 이른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엮매이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유도하는 것

도 하나의 보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며, 소유자와 관리자들에 대한 혜택이 다각도의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일본의 근대기가 우리와 유사하나 결코 우리의 국토 전반에 분포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방법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향후 우리의 풍토에 적합한 보존·활용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近代の文化遺産の保存と活用」、東京文化財研究所、1998년 11월 심포지움자료집
- 清水眞一著、「歴史ある建物の活かし方」、學藝出版社、1999. 7. 25
- 「滋賀縣の近代和風建築-滋賀縣近代和風建築 総合報告書」、滋賀縣教育委員會、1994
- 深堀 登、文化財、「旧横浜船渠株式會社第2号船渠」、文化廳文化財保護部監修、1998
- 「我が國の文化財保護施策の概要」、文化廳、1999
- 「産業技術史資料の評価・保存・公開等に関する調査研究」、國立科學博物館-産業技術史資料の評価・保存・公開等に関する調査研究企劃 推進委員會、1997
- 全國近代化遺産活用連絡協議會(제2회 總會・シンポジウム資料)、富山縣高岡市、1999
- 「近代の文化遺産の保存と活用について(報告)」(建造物分科會關係)、1995. 10
-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조사연구 보고서」、문화재청、1999. 12

#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for the Modern Ages in Japan

Kim, Tai Young

(Associate Professor, ChongJu University)

Kim, Dong Sik

(Doctoral Candidate of ChongJu University)

## ABSTRACT

Many cultural heritages for the modern ages in Korea are becoming lost rapidly as a result of subsequent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s and other reasons. But they are indispensable for an understanding of history, tradition culture of Korea, and form the basis for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future culture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to review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Japan, establishing the protection policies in Korea.

In Japan, The Advisory Committee for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odern Cultural heritage was organized by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And this classified modern cultural heritage into four fields, as like; ①monuments, ②buildings, ③fine arts and historical heritage, and ④life, culture, and technology to pursue concrete research and study. The next step is carrying out investigations to identify these cultural heritages, which were once the backbone of Japanese modernization and are now in the process of being lost, in an effort to preserve them as cultural heritage of the Japanese modernization period. The investigation will have conducted on an about eight year scheme starting with 1996. And it's will ask all local boards of education(of the prefectures, cities, towns, and villages throughout the country) to supply all related records or documents available and to cooperate in field studies.

So now, many cultural heritages for the modern ages in Japan have been designated as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 Registered Tangible Cultural Properties, Monuments, etc. And they have been prepared various tax policy(ex, reduction of the real estate tax). Also, that's examples are not only one by one but magnified with protection of large-scale construction associated with region. In addition, magnified with region's activities.

In conclusion, in the process, protection has been extended to a broader variety of cultural properties and much consideration has been given to the methods of protection in Japan.